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 추가 〉
■ 김기현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5960호)

2026. 3.

성 평 등 가 족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옥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 추가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기현의원 등 19인
2. 제 안 일 : 2026. 1. 12.
3. 회 부 일 : 2026. 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 일정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동시에 선고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되지 않고 있어 성범죄자의 취업이 허용될 경우 아동·청소년과의 대면접촉이 이루어져 성범죄가 재발생할 우려가 높은 기관·시설임.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포함시킴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두텁게 보호하고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 및 제57조제3항제18호 신설).

Ⅲ. 검토의견

1.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 추가

개정안은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을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시설에 성범죄 경력자의 취업 또는 노무 제공 여부를 점검·확인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7호·제57조제1항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법원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① ----- ----- ----- ----- ----- ----- ----- ----- ----- ----- ----- ----- ----- ----- -----

현행	개정안
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26. (생략) <u><신설></u> ② ~ ⑨ (생략)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 ----- ----- ----- ----- ----- ----- ----- ----- ----- ----- ----- ----- ----- ----- ----- 1. ~ 26. (현행과 같음) 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확인) ① ----- ----- ----- ----- ----- -----

현행	개정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 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 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한다.	----- ----- ----- ----- -----.
1.·2. (생략) <u><신설></u>	1.·2. (현행과 같음) <u>2의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u> <u>항제27호의 아동이나 청소년을</u> <u>대상으로 운영하는 방과 후 활</u> <u>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u> <u>시설</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 취업제한제도는 성범죄자가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
기간 동안(10년 이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청
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로,

업무 특성상 아동·청소년을 대면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기관
에 대하여 성범죄자의 해당 기관 운영 또는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아
동·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것임.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기관·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추가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해당 기관·시설에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자 등의 성범죄 경력을 정기적으로 점검·확인하도록 하여,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기관·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방지하려는 것임.

현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에 따라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는 학습공간을 운영하고 있음.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¹⁾, 공모 및 심사 등 채용절차를 거친 강사를 행복누리터(복합커뮤니티센터)에 배치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참고1]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그런데,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는 현행법 제56조의 성범죄 경력자 취업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의 채용 및 배치시 성범죄 경력 등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임.

방과 후 프로그램 강사나 아동·청소년 대상 체험활동 수행 인력 등

1) 유사 사례로 경상남도 진주시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 있음.

은 아동·청소년과 직접적으로 밀접한 접촉을 하게 되므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또는 체험활동 관련 기관·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시설을 성범죄자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또는 체험활동 기관·시설의 성범죄 경력자의 점검·확인 의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하고 있는데, 기관·시설의 운영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므로 취업제한 명령 위반 여부의 점검·확인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성평등가족부는 개정안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 후 활동 등을 운영하는 기관·시설 운영·종사자에 대한 성범죄자 전력 확인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취업제한기관으로 지정되면 헌법 제15조에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지정에 따른 법적 근거가 명확해야 하고, 성범죄의 경력 점검·확인 책임은 해당기관을 설치·지원·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644

[참고자료 1]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현황

□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현황

- 세종시장이 세종시교육감과 협력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2019년 1월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를 설치
- 학생(아동·청소년) 대상으로 세종시 행복누리터(복컴) 시설을 학습공간으로 활용하여 방과후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활동을 운영하고 있음
- 현재 방과후 프로그램 공모 및 심사 등 전반적인 채용 절차를 거친 강사를 행복누리터(복컴) 15개소에 배치하여 운영중에 있음

* 강사의 개인별 연평균 교육서비스 제공 : 88시간

- 운영 장소 : 동 지역 행복누리터 15개소

운영
(15개소)

- '20년(6개소) 고운동(南), 아름동, 새롬동, 한솔동, 보람동, 대평동
- '21년(5개소 추가) 고운동(北), 도담동, 종촌동, 다정동, 소담동
- '22년(2개소 추가) 해밀동 반곡동 / '23년(2개소 추가) 나성동 어진동

- 프로그램 운영 현황

구 분	합 계	아름	도담	해밀	고운 (남)	고운 (북)	종촌	한솔	새롬	다정	보람	소담	대평	반곡	나성	어진
프로그램수	98개	8	4	8	7	8	5	7	8	7	5	5	5	9	7	5
학 생 수	1,118명	105	37	95	82	97	51	107	95	67	48	57	39	112	78	48

[참고자료 2] 방과 후 활동 및 체험학습 관련 기관 설치·운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유치원·초등·중등·고등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서 재학 중인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
2. “방과 후 활동”이란 학생이 학교 등에서 받는 정규교육 과정 시간 후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취미·학습 활동을 말한다.
3. “체험학습”이란 학교 밖에서 학생이 교육인프라 등을 활용하여 스스로 다양하고 풍부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4.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제3조(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활동 등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종행복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진주시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란 진주시(이하 “시”라 한다) 시민의 자기주도학습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에듀 클러스터(edu cluster)”(이하“클러스터”라 한다)란 지역 내 교육기반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정보를 서로 교류하고 차별화된 특색 있는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된 지역별 또는 테마별 그룹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등) 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기주도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천안시 어린이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체험관운영) 체험관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실내 어린이 안전체험관 : 교통 및 생활안전체험관, 방송국체험관, 지진안전체험관, 승강기안전체험관
2. 실외 어린이교통안전체험장 : 도로, 철도건널목, 지하도, 터널, 교통시설, 교육용 차량, 페달카 등
3. 그 밖의 시설 : 사무실, 키즈카페, 창고 등